

칸트에 있어서 자유와 도덕법칙의 관계

허 정 훈

(사범대 윤리교육과)

〈 목 차 〉

1. 서 론
2. 전제로서의 자유
3. 두가지 관점
4. 이성의 사실
5. 결 론

1. 서 론

칸트에 있어서 도덕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가 한가지 방식, 즉 동시에 아무런 모순없이 보편적 법칙이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르는 방식으로 행위해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칙이다. 이러한 도덕법칙은 인식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적 법칙이며, 자율의 원리를 그 본질로 삼고 있는 법칙이다. 그러나 인간과 같은 불완전한 이성적 존재에게 있어서 실천법칙으로서의 도덕법칙은 행동에 관련된 강제와 의무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바꿔 말해서 도덕법칙은 인간 존재에게는 일종의 명령의 형식으로, 그것도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정언명령은 “어떤 행동에 의해 달성되어야 할 의도를 제약으로서 근저에 두지않고 행동을 직접적으로 명령”¹⁾하는 것이다. 즉 정언명령은 가언명령과는 달리 무조건적이며 모든 욕구나 경향성으로부터 독립된 선천적인 명제이며, 이성적인 존재자의 의지를 필연적으로 구속한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1)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Hrsg. von Wilhelm Weischedel (Suhrkamp, 1956). Bd. VII, s.45

일반적 원리로서의 가언명령과는 달리 이성적 행위자나 이성적 의지의 개념을 분석하므로써 어떤 방식으로 의욕해야 할 행동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단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이성적 의지의 개념에 연결시키는 종합명제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 행위자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이리이러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칸트는 이런 실천적인 선천적 종합명제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묻는다. 이런 문제는 인식에 있어서의 선천적 종합명제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수학이나 물리학의 현실적인 성과와 성과가 그런 명제들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식에 있어서 그 문제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이나, 도덕에 있어서는 그런 명제가 도대체 가능한가 한가라는 가능성 자체에 대한 문제이다.

강제나 의무, 정언명령, 또는 도덕법칙은 이성적 행위자 또는 그런 행위자의 의지를 분석하므로써 도출되지 않는다. 그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이성적 행위자가 자율의 원리에 따라서 행위해야만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정언명령이나 도덕법칙을 제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주어의 개념을 분석하므로써 도출될 수 없는 실천적 종합명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어와 술어를 결합시켜주는 제 3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²⁾ 그것은 도덕의 원리인 자율성의 원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강제와 의무가 가능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 도덕법칙과 일치하여 오직 의무로 말미암아서 행위할 수 있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칸트는 그런 조건을 자유의 개념 속에서 발견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성적 세계 속에서 발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감성적 세계 속에서는 오직 인과적인 물리적 필연성만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덕법칙의 가능성의 조건으로서의 이런 자유 개념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가?

2)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Riga, 1786). S.306.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이런 문제를 검토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흥미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도덕법칙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물론 우리는 『실천이성비판』에서 자유는 도덕법칙의 존재근거이며, 도덕법칙은 자유의 인식근거라는 귀절과 이성의 사실에 대한 칸트의 주장을 상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자유와 도덕법칙의 관계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형이상학 원론』과 『실천이성비판』이란 칸트의 두 저서를 염두에 두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칸트의 견해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자유의 전제에서부터 도덕법칙의 정당화로 나가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이성의 사실로부터 자유의 도입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종의 순환론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런 순환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서로 다른 논증의 순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2. 전제로서의 자유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원론』의 제3장 서두에서 의지를 이성적인 한에서의 살아있는 존재에 속하는 원인성의 일종으로 규정하면서, 그것을 외적인 원인들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특징지우고 있다.³⁾ 이런 규정은 “이성적 존재가 자신의 법칙의 표상에 따라서, 즉 원리에 따라서 행위하는 능력”⁴⁾으로서의 의지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 의지를 이성적인 존재가 현상계에서 어떤 외적 원인과도 독립적으로 결과들을 산출하는 능력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행위할 능력은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 능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⁵⁾ 그래서 어떤 것을 행할 능력이 있는 이성적 존재는 그가 실제로 물리적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없다해도 의지를 소유한다.

결과를 산출하는 이런 능력으로서의 의지는 특별한 종류의 인과성임을 주의해야 한다. 즉 그것은 자연적 필연성 하에서의 결과의

3) Grundlegung (Riga), S.305-6

4) Grundlegung (Riga), S.270.

5) H.J. Paton, The Categorical Imperative (Harper & Row, 1967), p.208

산출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행위하는 것이 단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모든 자연적인 인과적 행위도 의지의 산물이 되고 만다. 그러나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칸트는 의지의 독립적인 행위 능력의 특성을 자연적 필연성과 구별하여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다. 즉 이성적 행위자의 의지를 자유라고 할 때, 그것은 의지의 작용을 외적인 다른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지의 특성으로서의 자유는 의지가 자신과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결정됨이 없이 결과를 산출하는 능력일 경우에 존재하는 특성이다.

칸트는 이런 의지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 하고, 의지의 자율 즉 도덕의 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런 소극적 자유로부터 적극적 자유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한다. 그는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인과성의 개념이 법칙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래서 자유가 무법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법칙(자연의 법칙과는 다른 종류의 법칙)임을 주장한다.⁶⁾ 물론 그런 자유의지의 법칙이 바로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도덕성의 원리이며, 도덕법칙이다. 칸트가 “정언명령만이 실천법칙이며, 그 이외의 모든 명령은 의지의 원리라고 할 수 있지만, 법칙이라고 할 수 없다”⁷⁾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숙달의 규칙이나 사려의

6) Grundlegung (Riga), S.305-6. 칸트는 인과성이 자연적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되든 아니든 간에, 인과성의 개념이 법칙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aton은 이런 주장의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본다. 칸트는 인과성의 개념이 법칙의 개념을 포함하며, 그 법칙에 따라서 원인이란 것을 통해 어떤 다른 것, 즉 결과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그는 필연성이 아니라 자유로 특징지어지는 인과성도 무법칙적일 수 없고, 특별한 종류의 불변적 법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칸트가 말하는 법칙은 같은 원인들은 필연적으로 같은 결과들을 가지도록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자연적 필연성에만 적용된다. 이로부터 어떻게 자유의 법칙, 즉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부터 고려되는 인과적 행위를 위한 법칙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Paton의 지적이다. 왜냐하면 자유의 법칙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필연적 연결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Paton은 무법칙적인 자유의지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더 설득적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이것도 인과성과 법칙 사이의 어떤 필연적인 연결에서 도출되는 견해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법칙적인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연에 의해서만 지배되며, 따라서 자유라고 서술할 수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견해라는 것이다. Paton, p.211 참조.

7) Grundlegung (Suhrkamp), s.50. 물론 법칙이란 말이 반드시 명령의 개념

충고와는 달리 오직 도덕적 명령만이 엄격하게 법칙이라 불리울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숙달의 규칙이나 사려의 충고는 가언적 명령만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려로부터 정직해야 한다는 권고나 준칙은 오직 관련된 특정한 이해관계를 받아들일 경우에만 정직을 명령할 수 있다. 반면에 정직해야 한다는 도덕적 명령은 어떠한 가언적 조건에도 구속받지 않는다. 그것은 그 자체 보편적 규칙으로서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의해 자기자신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스스로 부과한 법칙에 따라서 인과적 행위를 일으키는 자유 의지의 자발성이 바로 자율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자율의 원리 하에서 행위하는 것, 즉 동시에 보편적 법칙으로 의욕할 수 있는 준칙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표현에 의하면, 자유의지와 도덕법칙 하에 있는 의지는 하나이고 동일한 것이다.⁸⁾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 개념을 분석만 하면 도덕성과 그것의 원리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자유로부터 도덕성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에게만 법칙이 되고 또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타당한 도덕법칙이 자유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유가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의 특성임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증명은 사실 불가능하다.⁹⁾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행동에 대한 경험에 의거하므로써 증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경험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경험은 단지 사실만을 제공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성적 존재자와 자유 사이의 필연적 연결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의 연속적인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경험에서 드러나는 것도 자유라기 보다는 자연적 필연성이거나 아니면 그런 필연성과 뒤섞여진 혼란스런 상태일 수 있다. 따라서 칸트는 어떤 경

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칙은 모든 이성적 행위자에게 타당한 무조건적 필연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완전한 이성적 행위자에게는 명령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언명령이 곧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Paton, p.116 참조.

8) Grundlegung (Riga), S.306

9) Grundlegung (Suhrkamp) s.83

힘을 토대로 자유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덕형이상학원론〉에서 자유의지를 증명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을 뿐이라고 Paton은 해석하고 있다.¹⁰⁾

사실 칸트가 밝히고 있듯이¹¹⁾, 이성적 행위자가 자유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성적 행위자가 자신이 자유롭다는 전제 위에서 행위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가 자유의 원리 하에서 행위하는 것임을 분석적(간접적)으로 드러낼 수는 있다. 즉 이성적 행위자가 자유의 이념 하에서 (자신이 자유롭다는 전제 하에서) 행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자유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고 있는 법칙, 즉 의지를 규정하는 본질적인 형식적 조건으로서의 의지의 자율성이 이성적 존재자에게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성적 행위자가 자유롭다는 전제를 확립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위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실마리는 “이론적으로 자유롭다고 알려진 존재에게 적용되는 법칙은, 행위를 위해서는 자신이 자유롭다는 전제 위에서 행위해야만 하는 존재에게도 적용되어야만”¹²⁾한다라는 원칙이라고 Paton은 지적하고 있다. 이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우리가 이론이성의 인식적 측면을 드러다보면 알 수 있다. 우선 칸트는 스스로 이성적임을 의식하고 있는 이성은 자신의 판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¹³⁾ 만일 영향을 받는다면, 이성적 존재자는 자신의 판단을 이성이 아니라, 충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따라서 이성인 한에 있어서 이성은 어떤 외적인 영향력과는 무관하게 자기 자신이 복종하고 따르는 자신의 법칙이나 원리에 대한 창시자여야만 한다. 말하자면 이성은 외적으로 주어진

10) Paton, p.212.

11) “우리는 도덕성의 결정적 개념을 결국 자유의 이념에 귀착시켰다. 그러나 자유의 이념을 어떤 현실적인 것으로서 우리들 자신 안에서와 인간성 안에서 증명할 수는 없었다.” Grundlegung (Suhrkamp), s.84

12) Paton, p. 217. Cf. Grundlegung (Suhrkamp), s.83

13) Grundlegung (Riga), S.308. (Suhrkamp), s.83

감각을 기초로 추리함에 있어서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창조한 원리에 따라 추리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성인 인식적 추리 활동에서도 스스로를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 자유롭다고 간주해야 한다.¹⁴⁾ 마찬가지로 행위에 있어서도 이성적 존재는 자유의 이념 하에서 행위해야 한다. 행위는 사고에 앞서거나 뒤따르는,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사고 만큼이나 지적이며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행동은 동물의 행동과 달리 원리에 따라 의욕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 이성적인 것이다. 물론 여기서 문제되는 원리는 실천이성의 객관적 원리로서, 숙달과 자기에의 객관적 원리가 아니라, 오직 보편적 법칙수립에 있어서의 행위의 법칙이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이성적인 존재자에게는 정언 명령으로 나타나는 자율의 원리이다. 따라서 이성은 실천이성으로서 즉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로서 이성 자신에 의해 자유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서 이성적 존재자는 자신의 행위의 주관적 원리 즉 준칙이 언제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로 타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보편적 법칙의 실례로서 의욕하기 위해서 자유의 이념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의 이념 하에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의무로 말미암아 행위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자유의 이념 하에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편적인 도덕법칙의 입법자로 간주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의 이념은 실천적으로 불가결하며, 도덕의 필연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3. 두가지 관점

자유와 법칙의 관계를 확립해가는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암암리에 드러나고 있듯이, 자유의 전제는 이성적 행위자의 개념으로부터 확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도덕성의 개념에 기초한다. 즉 이성적 존재자를 위한 필연적인 자유의 전제는 자율의 원리를 인정하는 데에 기초한다. 반면 이성적 존재자가 도덕법칙에 복종해야 하는

14) Paton, p.218

이유는 자유의 전제에 기초한다. 말하자면 도덕성의 개념은 자유의 이념에 기초한다. 여기서 순환론이 등장한다. 왜냐하면, 의지의 자유와 의지의 자기 입법은 둘다 자율이고, 따라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르게 보이는 표상들을 논리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귀착시키는 (등가의 여러 분수를 간단한 분수로 귀착시키듯이) 교환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¹⁵⁾ 그러므로 두 개념 중의 어느 하나로 다른 것을 설명하거나 근거지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도덕법칙 하에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즉 정언명령에 종속되기 때문에) 자유로워야 한다고 간주하고, 반면에 우리가 자유로우므로 도덕법칙에 복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¹⁶⁾ 즉 의지의 자유가 전제되면 그로부터 도덕의 원리는 분석적으로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자유롭다고 전제해야 하며, 의지가 자유롭다고 전제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존재자가 도덕법칙 하에 있어야 하며, 이성적 존재자가 도덕법칙 하에 있기 위해서는 다시 그의 의지가 자유로워야 한다.

우리는 이런 순환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칸트는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서 두관점을 도입한다.¹⁷⁾ 즉 우리 자신에 관해 똑같이 정당한 두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우리 자신을 예지계에 속하고 그래서 자유롭다고 보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을 현상계에 속하고 그래서 인과적 필연성 하에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만일 우리가 인간 행위자를 경험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현상계에 속한 존재로만 간주한다면, 그런 행위자는 물질적 기계로 생각하든 또는 라이프니쯔처럼 정신적 기계로 생각하든간에 타율적으로만 행동하는 존재가 되며, 시계의 운동과 같이 인과적으로만 규정되는 존재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심리학적 자유는 본질상 한 번 태업을 감아주면 저절로 움직이는 장난감의 자유보다 하등 나올 것이 없는 것이다.¹⁸⁾ 현상적 행위자의 모든 욕구들은 지금의 그가 통제

15) Grundlegung (Riga), S.310

16) Grundlegung (Riga), S.309-10.

17) Grundlegung (Riga), S.310

18) I.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Felix Meiner, 1974).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하게 필연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과거의 제약들에 의해 형성되고 규정되는 것이다. 더욱이 사려적인 행위에서 사고가 인과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런 종류의 사고 또는 실천이성 또는 의지는, 숙고와 동기 그리고 목적과 실천적 규칙과 같은 모든 다른 관념들도 마찬가지로, 인과적으로 제약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규정하는 근거는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무한한 인과적 관계의 긴 사슬 속에서 있기 때문이다. 현상적인 심리학적 사건들은 정신의 관념들의 내적 연쇄이며,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추론처럼 그것들 모두는, 적어도 이상적으로는, 경험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모든 추론들은 화학적 반응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간 행위자의 능력이 야수적 동물보다 우월하며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인간 행위에 대한 현상적 관점 이외에 다른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그 다른 관점을 우리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인간은 인식적 측면에서 자신에 대해서 조차 내감에 의해서 알려진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자기자신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는 없다는 것이 『순수이성비판』의 귀결이었다. 즉 인간은 자신에 대해 오직 내감¹⁹⁾에 의해서 알려지는 한에서, 그리고 자신의 의식의 촉발되는 방식에 따라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에 의하면,

s.113

- 19) 외감이 물리적 대상의 인식을 위한 통로인 것처럼, 오늘날 내성(introspection)이라 불릴 수 있는 내감은 자아의 인식을 위한 통로이다. Paton에 의하면, 내감은 외감과는 달리 특별한 감각기관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에 주어진 개별적인 어떤 것(마음의 상태, 사고, 느낌, 욕구, 결심 등)에 대한 직접적 자각이기 때문에, 일종의 감각으로 묘사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외감에 주어진 것으로부터 사고 작용을 거쳐 물리적 사물에 대한 인식을 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감에 주어진 것을 기초로 우리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내성 또는 내관을 통해 자각하고 있는 정신적 상태의 연속성은 나타나는 대로의 자아, 즉 현상적 자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적 자아는 인식대상으로서 범주 특히 원인과 결과의 범주 하에 포섭되어야 하며, 이 범주는 시간에 있어서의 객관적 연속성과 관련된다. 그러기 때문에 현상적 자아는 자연적 인과법칙에 종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Paton, p.233-4. 참조.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물이나 또는 대상에 의해 촉발되는 한의 자신으로부터 구별되는 독특한 하나의 능력 즉 이성을 발견한다고 한다. 이성은 이념을 통해 오성의 한계를 규정하므로써 오성을 능가하는 순수한 자발성이다. 이러한 이성을 통해 인간은 순전한 현상으로부터 조직된 자신의 주관의 성질 배후에 놓여있는 자신의 자아 자체를, 그 성질이 어떠하든, 필연적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칸트는 주장한다. 그래서 인간은 저급한 능력의 측면, 즉 감각들의 단순한 지각과 수용의 측면에서 볼 때, 감성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순수 자발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예지자로서 예지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오성은 아무리 능동적이거나 자발적이라해도, 그리고 또 수동적인 감각과 구별되는 능력이라해도 감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감각가능한 대상의 인식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이성은 그런 한계를 지니지 않는다. 이성은 매우 순수한 자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념을 수단으로 해서 대상으로서의 감각가능성을 지니는 모든 것을 넘어서 나아간다. 이성은 현상계를 무제약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모순에 떨어지고 만다는 점을 보여주며, 따라서 현상계를 넘어서 무제약적인 것을 추구한다. 즉 이성은 현상계를 제약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무제약적인 것을 예지계에 속하는 것으로 돌리므로써 그런 모순을 해결하며, 현상계와 예지계를 구별해낸다. 물론 이런 구별의 밑바탕에는, 앞서 본 것처럼, 이성의 순수한 자발적 활동에 대한 칸트의 생각이 놓여있다. 이성의 순수 자발적 활동을 기초로 칸트는 인간을 독립적인 이성의 원리에 따라 사고할 뿐만 아니라 의욕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성적 존재자는 자신을 관찰하고 또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는 법칙과 자신의 모든 행위 법칙을 인식할 수 있는 두가지 관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첫째로 그는 자신이 감성계에 속하는 한에서 자연의 법칙(타율) 하에 있고, 둘째로 예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자연과는 무관하게 경험적이 아닌 이성에만 근거하고 있는 법칙 하에 있다.”²¹⁾

20) Grundlegung (Suhrkamp), s.87

21) Grundlegung (Riga), S.312

칸트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지적 존재로서 인간 행위자와 행위는 무법칙적일 수 없으며, 또한 동물 및 그 행동과는 달리 현상계의 법칙에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성에만 근거하는 법칙에도 종속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법칙이 바로 도덕법칙이므로 자유와 도덕법칙과의 순환은 해소된다고 칸트는 생각하고 있다.

이성적 존재자, 따라서 예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의 인간은 그 자신의 의지의 원인성을 자유의 이념 하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감성계를 규정하는 원인에서의 독립성이 바로 (이성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부여해야 하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자유의 이념에는 불가분적으로 자유의 개념이 결합해 있으며, 자유의 개념은 도덕의 보편적 원리와 결합해 있다. 이념 속에서 이성적 존재자의 모든 행위의 근거에는 모든 현상의 근거에 자연법칙이 있듯이 도덕원리가 있다.²²⁾

그러나 이런 두관점이 악순환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칸트는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이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Paton은 두관점론이 도덕적 자유와 인과적 필연성을 조화시키는 방법일 수 있다고 보지만,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인지는 의심스럽다고 한다.²³⁾ 왜냐하면 칸트는 도덕적 자유와 인과적 필연성의 순환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순환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즉 칸트는 이성적 존재는 자신을 예지자로서 예지계에 속한 존재로서 간주하므로써만 자유의 이념 하에서 행위하고 자율이라는 도덕법칙에 종속되는 존재로 여길 수 있다고 하면서²⁴⁾, 그 다음에서 다시 그는 우리 자신을 자유로서 간주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지계의 성원으로 옮겨놓으며 의지의 자율과 도덕성을 지닌 존재로 여길 수 있다²⁵⁾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가 예지계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부터 자유에로 논증하는지, 아니면 자유에서 예지계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논증하는지가 분명치 않게 된다.

22) Grunglegung (Riga), S.312, (Suhrkamp), s.88-9.

23) Paton, p.225

24) Grundlegung (Riga), S.312

25) Grunglegung (Riga), S.313

또한 칸트가 두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악순환을 피할 수 있었다해도, 이론이성에서 출발하여 그것에서부터 예지계의 구성원임을, 또 자유를, 그리고 구속력을 지니는 도덕법칙의 특성을 추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라면, 악순환을 피하는 대신에 근본적인 오류에 떨어진다고 Paton은 지적하고 있다.²⁶⁾ 왜냐하면 도덕적 의무를 도덕과는 전혀 무관한 순전히 형이상학적이거나 인식론적인 고려에서부터 연역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유와 예지계의 구성원에 관한 형이상학적인 고려가 독립적으로 확립되었다고 여겨지는 도덕원리를 옹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고려가 도덕원리를 확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추론을 통해서 자유의 전제로부터 도덕성을 도출할 수는 없으며, 또한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예지계의 구성원이라는 전제로부터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전제로 해야 할 필연성을 도출할 수도 없다. 특히 Paton에 의하면 도덕이 어떤 도덕적 고려와도 무관하게 확립된 도덕과 무관한 자유와 예지계의 구성원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도덕형이상학 원론』의 가정은 잘못이라고 한다.²⁷⁾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칸트의 예지계의 구성원이라는 주장을 순전히 형이상학적인 근거에서 도덕적 주장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이미 밝혀진 도덕적 주장에 대한 형이상학적 옹호로 여기는 것이 더욱 만족스러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물론 이와같은 Paton의 지적은 현상계와 예지계라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볼 때 옳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칸트가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는지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세계만이 존재하며,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개의 세계로 생각된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감각경험에 나타나는 대로의 세계와는 별도로 그 밑바탕에 그 자체로 존재하는 세계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그 두 세계는 구별되어지는 두 개의 세계가 아니

26) Paton, p.226

27) Paton, p.221

28) Paton, p.224

라,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보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현상계와 예지계는 구별되어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보는 두 개의 관점일 뿐이다.²⁹⁾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측면에서 보여지는 오직 하나의 세계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다면 자유와 도덕법칙의 순환은 진정한 의미의 순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과는 무관한 형이상학적 고려에 의해 도덕의 원리를 확립할 수 없다는 Paton의 지적은 남아 있으며,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는 자유를 전제할 수 있다해도 자유로부터 도덕법칙으로 추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

4. 이성의 사실

우리가 도덕을 도덕과 무관한 자유와 예지계의 구성원이라는 개념에 의해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은 칸트로 하여금 『실천이성비판』에 와서, 자유를 전제하고 도덕법칙의 정당성을 도출하려는 『도덕형이상학 원론』의 견해를 포기하게 하고, 정반대되는 견해를 주장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건없이 실천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애초에 어디서 출발하는가, 즉 그것이 자유에서인가 또는 실천법칙에서인가 하는 것을 나는 문제삼고자 한다. 그런데 조건없이 실천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자유에서 기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유에 대한 최초의 개념은 소극적이므로, 우리는 자유를 직접적으로 의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현상들의 법칙을, 따라서 자유의 정반대인 기계적 자연을 인식하게 하므로, 경험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를 추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의 준칙들을 생각해내자 마자) 직접적으로 의식하는 것은 도덕법이다. 도덕법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성이 도덕법을 어떤 감성적 제약에 의해서도 극복할 수 없는 규정근거, 그런 제약에서 독립한 규정근거로 표시하므로써, 도덕법에서 다름아닌 자유의 개념에 도달하는 것이다.³⁰⁾

29) L.W. Beck,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0), p. 192.

30)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Edix Meiner, 1974), S.34

칸트는 이제 가상계에 속한 자유의 개념을 통해 도덕법칙을 정당화하기 보다는 도덕법칙을 통해 자유를 도덕의 영역 속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덕법칙은 적극적 의미의 의지의 자유를 전제할 경우 분석적인 명제가 되기는 하지만, 자유는 실제로 인정될 수 없는 일종의 지성적 직관을 요구하는 예지적 세계의 특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에서부터 도덕법칙을 도출할 수는 없게 된다. 자유의 의식은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유의 의식과 같은 이성의 자료로부터 도덕법칙을 도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는 실천이성의 근본법칙을 이성에 앞서있는 자료들(예컨대 자유의 의식)에서부터 도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순수 직관이든 경험적 직관이든, 어떤 직관에도 기초하지 않는 선천적인 종합명제로서 우리에게 의식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¹⁾ 따라서 자유와 도덕법칙의 참된 순서는 순수 의지의 개념이 순수 실천법칙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순서가 된다.³²⁾

칸트에 의하면, 경험이 이런 순서를 드러낸다고 한다. 즉 어떤 사람이 색욕의 경향성으로 해서 마음에 드는 대상과 그 대상을 얻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경향성을 이기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런 기회와 동시에 경향성의 충족 이후에 그에게 교수대가 주어진다든 것을 알게되면, 그런 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칸트는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진실을 말하면 사형에 처하고 위증을 할 경우 살려준다고 위협받는 경우에도, 비록 죽음을 당하더라도 위증하지 않는 행위를 실제로 하지 못한다해도,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예에 의거할 때,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의식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판다”³³⁾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덕법칙이 없었으면 잘 알지 못했을 자유를 도덕법칙으로 인해서 인지하는 것이다.

31) K.d.p.V., S. 36-7

32) K.d.p.V., S. 35

33) K.d.p.V., S. 35

이런 도덕법칙에 대한 의식을 칸트는 “이성의 사실”³⁴⁾이라 부른다. 이 이성의 사실과 더불어 “순수이성은 그 자체 홀로 실천적이며 우리가 도덕법칙이라 부르는 보편적 법칙을 제공”하는 것이다.³⁵⁾ 그렇다면 칸트는 이제 『도덕형이상학 원론』과는 반대로, 즉 자유를 전제로 해서 도덕법칙의 타당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사실을 기초로 자유에로 나아가자 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성의 사실은 도덕법칙에 대한 의식에 불과하며, 우리가 도덕법칙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의식된다는 사실이 자유를 끌어들이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법칙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법칙 자체의 사실이다.

사실 칸트는 이 점을 드러내는 말을 하고 있다. “아무런 오해없이 이런 법칙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경험적 사실이 아니라, 순수 이성의 유일한 사실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³⁶⁾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법칙 자체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사실인가? 이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성의 사실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 경험을 설명하고 이해가능한 것으로 만들려 한다면 가정되어야 하는 사실이 도덕법칙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 사실이란 말은 엄밀하게는 가정이라는 말과 다른 것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체계화한다고 생각되는 경험 그 자체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우리가 도덕법칙을 의식하고 있다)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실(순수 실천이성으로부터만 생길 수 있는 법칙이 있다)로 전환할 수 없게 되고, 다시 순환논증에 빠지게 되는 것 같다.³⁷⁾

이런 문제에 대해 Beck은 <사실>에 대한 의미의 이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 대신에 그는 순수이성을 위한 사실과 순수이

34) K.d.p.V., S.36

35) K.d.p.V., S.37

36) K.d.p.V., S.37

37) L.W. Beck, p. 167-8

성의 사실을 구별한다. 전자는 실천이성에 의해 그 대상으로 알려진 사실을 의미하고, 후자는 반성적으로 이성에 의해 알려진 순수 이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³⁸⁾ 순수 이성을 위한 사실로서 즉 특수한 통찰 또는 직관의 대상으로서 도덕법칙을 생각할 때의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감성적 직관 없이 순수 이성에 의해 알려지는 어떤 사실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들은 오직 직관을 통해서나 직관에 의해서만 이성에게 주어진다. 반면에 순수 이성의 사실은 어떤 의지에 있어서나 순수하게 이성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Beck은 지적한다.³⁹⁾ 이성 그 자체에 의해 이성에게 주어지는 법칙만이 순수 이성에 의해 선천적으로 알려질 수 있으며, 따라서 순수 이성을 위한 사실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도덕법칙은 오직 이성의 자율성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도덕적 의식 또는 의무 의식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물론 근본적으로 그것은 의무가 일종의 환상이거나 망상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사실상 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이 존재하며 나의 의무는 그 신의 의지에 의해 규정된다고 믿는다면, 이 때 내가 의무의 요구를 느낀다는 사실은 참일 수 있다. 물론 그 사실은 그 의무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강제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순수 이성을 위한 사실로서의 도덕법칙은 오직 이성 그 자체의 입법만을 표현하기 때문에, 순수 이성의 사실이 순수 이성을 위한 사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에게는 어떤 타당한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칸트의 형이상학적 연역은 이런 법칙이 무엇이어서 하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며, 그것은 순수 이성을 위한 사실이다.

결국 이성의 사실에 대한 칸트의 주장은 어떤 의지에 있어서나 순수하게 이성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욕구능력을 완전히 지배하는 이성적 행위자는 그가 필연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행위할 자율의 원리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을

38) L. W. Beck,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0), p.168

39) L.W. Beck, p.169

지닌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 이념과 도덕법칙은 순수 실천이성의 무조건적이고 필연적인 원리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두관점론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유와 도덕법칙의 악순환이 실로 순환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에 대한 두가지 설명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앞면만을 볼 수 있고 그 뒷면을 볼 수 없는 동전에 마주 서있는 셈이 된다. 그리고 앞과 뒤가 두 개의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비록 뒤로부터 앞으로 추리할 수는 없다해도, 앞으로부터 뒤로 추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칸트가 자유를 전제하고 도덕법칙의 정당성을 추리하려 했던 『도덕형이상학 원론』의 견해를 포기하고, 도덕법칙으로부터 자유에로 진행했던 『실천이성비판』의 순서가 옳았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부가되어야 할 점은 만일 우리가 이성의 사실로 드러나는 이성의 원리 즉 도덕법칙에 우리가 왜 종속되어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칸트의 도덕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는 점이다. 그런 물음은 우리의 복지나 행복과 같은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의무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어떤 조건 하에서 무제약적인 도덕법칙에 따라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그런 질문은 칸트가 생각하고 있는 무제약적인 도덕법칙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칸트의 도덕에 대한 주장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순수이성의 사실이 이성은 이성에 의해 알려진다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성은 자신에게 그 자신이 부과한 법칙만을 선천적으로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법칙이 순수이성을 위한 사실이 된다면, 자유와 도덕법칙의 순서 문제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도덕형이상학 원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로부터 도덕법칙에로가 아니라, 도덕법칙으로부터 자유에로가 올바른 순서가 된다. 그러나 단순히 도덕법칙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법칙에 앞서 이성

자신의 활동에 대한 이성의 직접적인 통찰을 기초로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순수이성의 사실은 도덕법칙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성 자신이 이성을 드러내고 따라서 이성 자신이 부과하는 도덕법칙을 선천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식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이성적 존재는 이성적 사고의 원리들을 직접 통찰해야만 하며, 자신을 이런 원리에 따라서 사고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과 같다. 더우기 이성적 존재는 그 사고의 원리들이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즉 그런 원리는 보편적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칸트는 “이성은 이성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야기되는 것을 통찰할 뿐”⁴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이성적 추론과 사고가 있을 수 없게 되며,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근본적인 간격이 있는 이 세계에서 인간이 자연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

마찬가지로 실천의 측면에서도 이성적 행위자는 이성적 행위의 원리들을 직접 통찰해야 하며, 자신을 이런 원리에 따라 행위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또한 이성적 행위자는 이런 원리가 모든 이성적 행위자에게 타당해야 한다고 간주해야 하며, 보편적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것이 이성적 행위자가 필연적으로 모든 이성적 행위자에게 보편타당한 원리에 따라서 행위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의 사실은 거부될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의 합법칙성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오직 분석해 보기만 하면 좋다. 그렇게 할 때, 비록 어떤 경향성이 행위의 합법칙성을 방해한다해도, 이성이 자신을 선천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보면서, 그리고 그 자신에 의해 행위에 있어서의 의지의 준칙을 항상 순수 의지 즉 이성 자신에서 지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⁴¹⁾

40)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Bxiii

41) K.d.p.V., S.37